법인이 계약한 종신보험 비용처리

- 조세심판례에 근거한 비용처리 방법 -

법인계약은 계약자 • 수익자를 법인,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고 또는 해지시 자산처리한 부분과 수령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과 매년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2007. 4. 4.자 조세심판례」에 따른 종신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보험 세무처리 관련 조세심판례

[제목]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보험료 중 <u>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u>은 저축성 보험료로서 손금불산입 하여 <u>자산으로 처리하고</u>, 나머지 보장성보험료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는 임원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나머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국심2006서3194 (2007.04.04)



종신보험 비용처리 방법

	<u>l</u> 계약 체결		
계약자 [법인	나머지 보험료	손금산입
피보험자 ?	임직원	해약 한급 금 상당액	자산처리
수익자 [법인	총 납입보험료	

[조세심판례에 근거한 종신보험 회계처리]



조세심판례에 근거한 종신보험 회계처리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손금처리보험료	자산계상보험료
1년	60,000,000	0	0.00%	60,000,000	0
2년	120,000,000	48,840,000	40.70%	11,160,000	48,840,000
3년	180,000,000	102,240,000	56.80%	6,600,000	53,400,000
4년	240,000,000	157,440,000	65.60%	4,800,000	55,200,000
5년	300,000,000	212,100,000	70.70%	5,340,000	54,660,000
6년	360,000,000	264,240,000	73.40%	7,860,000	52,140,000
7년	420,000,000	317,520,000	75.60%	6,720,000	53,280,000
8년	480,000,000	372,000,000	77.50%	5,520,000	54,480,000
9년	540,000,000	426,060,000	78.90%	5,940,000	54,060,000
10년	600,000,000	481,800,000	80.30%	4,260,000	55,740,000



3년차 비용처리 보험료는?

비용처리 보험료 계산



종신보험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앞서 법인이 특정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품의서, 복리후생규정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약을 함께 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